

2026년도 상반기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계획 공고

「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2.

관 악 구 청 장

1. 용자 개요

□ 용자규모 : 35억 원(상반기)

□ 용자조건

○ 용자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

○ 용자한도 : 중소기업 1억원 이내,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

○ 용자금리 : 연 1.5%

○ 상환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※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용자금이 조정되거나 용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용자대상

○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(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)

- 용자 제한 :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제한업종 【붙임 참조】

※ 단,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가능자에 한하며 용자지원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용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2. 용자 신청

□ 신청기간 : 2026. 1. 19. ~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·접수

□ 접수처 :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(관악구청 지하1층)

※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, 신청 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문의 :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☎887-3803 내선:3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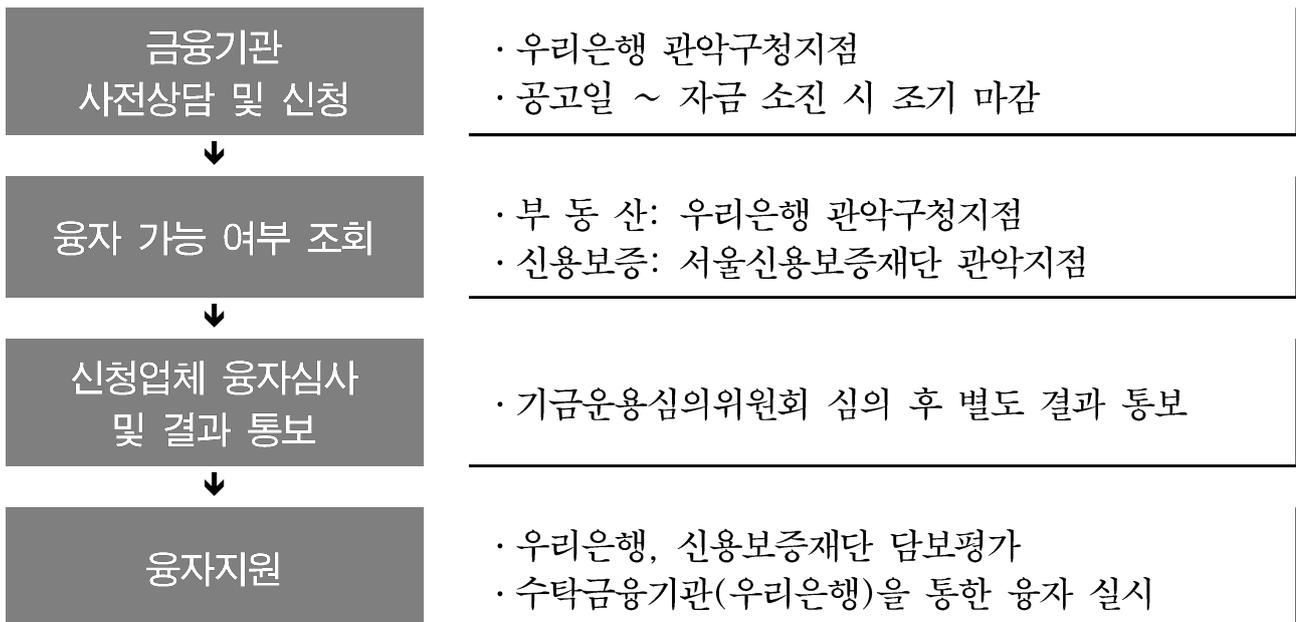
3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

□ 심의일정 : 신청기간 월 1회 개최 예정

※ 심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기금융자 절차

□ 기금융자 절차



5. 제출 서류

융자신청 제출 서류

-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【붙임 참조】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공장등록증명서(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)
- 특허, 신기술,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(해당기업에 한함)
- 시설구입 입증자료(시설자금에 한함) 및 수출실적증명서(해당기업에 한함)
- 중소기업확인서(해당되는 경우)

6. 기 타

- 지원시기 : **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**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이 있어야 하며, 융자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
- 부동산 담보 융자의 경우 'KB부동산 시세' 및 '공시지가'가 확인되는 집합 건물에 한해서 융자 가능하며, 은행의 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14조에 따라 대출 실행일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장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예금성 상품 및 그 외 별도로 정한 상품을 체결할 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7. 문 의 처

-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(☎ 879-5749)

< 붙임 >

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211	일반 유흥주점업
56212	무도 유흥주점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운영업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68	부동산업. 다만, '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' 및 '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서,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'는 제외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단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,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(66199)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기타	다단계판매업. 다만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 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